

청심국제중학교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보통교육의 시행과 신장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청심국제중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3번지에 둔다.

제 2 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4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 3 장 수업 연한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 학기) 매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조(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 · 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9월 30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과정 · 고사 및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운영방법) ① 수업시간의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과정수료의 인정)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있어 전·편입생은 전적교의 교육과정 이수 상황과 출석일수를 그대로 인정하되, 성적 평가는 본교의 기준에 맞게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①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교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학년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위탁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 후 실시한다.

③ 위탁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생활기록을 나이스 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의 평가와 출석일수로서 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 하였다고 인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제16조(입학 시기)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및 선발)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국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교의 제 1학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에 제

시한 입학지원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선발한다.

제18조(재입학) ① 본교를 자퇴했거나, 중학교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경우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시킬 수 있다.

② 이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편입학)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는 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학력 및 학교 인정, 편입학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본교 전·편입학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서약서) 입학(전·편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인 및 부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보증인이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부재한 경우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신상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을 거듭할 수 없다.

③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일(또는 월)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 7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5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등)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위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생활관 퇴소 등)는 본교 규정인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 8 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8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신설)

⑤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9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9 장 수업료 · 입학금 · 기타 비용 징수

제30조(수업료 등 징수)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 ③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31조(수업료 감면 기준) 가정 환경 기타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생 자치 활동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칙개정

제32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심국제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제36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기숙사

제37조(기숙사 운영) ① 본교에서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기숙사를 둔다.

- ② 기숙사에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원은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숙사 운영 및 생활 수칙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 ①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의 제·개정과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 ③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학칙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학칙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졸업장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중학교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년월일

청심국제중학교장 ○○○○

제 호

졸업장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교 조기졸업 규정에 의해
중학교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
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청심국제중학교장 ○○○